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유족인정(법 제14조), 구제급여 지급결정(법 제16조제2항), 수급권 변동신고(법 제43조), 구제급여 일시중지(법 제45조) 주체 또는 신청 대상이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38조, 안 제43조)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폐지(법 제8조)되고,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법 제16조)되어 변경된 구제급여 심의·결정 방식을 규정(안 제12조)

다. 법 제4장 제명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로 변경(석면피해구제 심의체계 ; 3심제 → 2심제)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29조, 안 제34조)

라.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30조, 현행 제31조, 현행 제34조, 현행 제35조, 현행 제3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술원”을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및”을 “한다),”로, “같다)”를 “같다)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3호 중 “기술원의 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를 “인정하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기술원”을 “위원회”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사청구인의 이름”을 “재심사청구인의 성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원은 심사청구”를 “위원회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를”을 “재심사청구를”로 한다.

1. 재심사청구 신청내용

3. 재심사 의결내용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와”를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 및”으로, “3명”을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재심사 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2명”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원”을 “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원이”를 “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원의 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을 “인정한”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기술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행 업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을 “따른 석면피해자 사전 발굴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취급 등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기술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의 결정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의 지급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에 관한 업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지급중단 결정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에 관련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10.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 및 검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지원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지원에 관한 업무

12.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관계기

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취급 등에 관한 사항

⑥ 법 제51조제3항에서 ‘운영기관의 장’은 기술원의 원장을 말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를 “(제4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업무를 위탁받”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자 사전 발굴 등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13.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련자료의 요청 및 취급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 ----- ----- -----.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 <u>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u> 」에 따른 <u>한국환경산업기술원</u> (이하 “ <u>기술원</u> ”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1. ----- 「 <u>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u>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u> (이하 “ <u>위원회</u> ”라 한다)로부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u>환경부장관</u> 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 ----- <u>위원회의 위원장</u> ----- ----- -----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u>기술원</u> 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 ----- <u>위원회</u> ----- ----- ----- ----- ----- -----

다.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삭 제

② 기술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② 위원회는 -----

한다), -----

-- 같다)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원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1. · 2. (생 략)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9조(심사청구의 신청) 법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위원회의 위원장-----
----- 인
정하여 -----

제4장 재심사청구

제29조(재심사청구의 신청) -----
----- 재심사청구-----

----- 위원회-----
----.

<삭 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 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제3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삭 제>

및 안전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항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6. (생략)

③ 기술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제34조(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장”은 “재심사위원장”

사청구-----
-----.

② -----
-----.

1. 재심사청구 신청내용
2. 재심사청구인의 성명 ---
3. 재심사 의결내용

<삭 제>

4.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를 -----

-----.

<삭 제>

<삭 제>

으로,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와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 및 -----

----- 1명
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재심사 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2명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3. <u>주문</u> 4. <u>재심사청구의 취지</u> 5. <u>이유</u> 6. <u>재결 연월일</u> ③ <u>환경부장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기술원 및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u> ④ <u>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u>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2. (생략) ② (생략)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u>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u>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 ----- <u>위원회</u>-----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 ----- <u>위원회가</u> - -----
--	--

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법
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
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② (생략)

제43조(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기술원
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
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
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위원회의 위원장-----

인정한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위원회
는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 업
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
호에 따른 대행 업무는 석면으
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정
신적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u>제44조의2 · 제44조의3</u> (생략)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u> 2. <u>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u> 3. (생략) <u><신설></u> ② <u>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u>	<u>말한다</u> <u>제44조의3 · 제44조의4</u> (현행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과 같음)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 ----- -----. <u><삭제></u> 2. ----- <u>따른 석면피해자 사전 발굴 등</u> ----- ----- 3. (현행과 같음) 4. <u>제2호부터 제3호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취급 등에 관한 사항</u> <u><삭제></u> ③ <u>법 제51조제2항제3호</u>----- -----
---	---

금 부과·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생략)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기술원에게 위탁하는 업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
피해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유효
기간의 갱신 여부 결정을 위
한 결정청구 접수 및 신청서
류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
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
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구제
급여 지급의 결정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에 관한 업
무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
급 요양급여 등의 지급청구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에 관한 업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지급중단 결정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신청서류 확인 및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에 관련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10.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 및 검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지원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지원에 관한 업무

12.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기술원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업무
와 관련하여 법 제49조에 따
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취급
등에 관한 사항

⑥ 법 제51조제3항에서 ‘운영기관’은 기술원의 원장을 말한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45
조제1항 및 제3항-----
-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
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1. ~ 5. (생 략) 6. 법 제35조에 따른 <u>심사청구</u> 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u>재심사청</u> <u>구에 관한 사무</u> 8. 법 제39조에 따른 <u>재심사위</u> <u>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u> <u>관한 사무</u> 9. ~ 11. (생 략) <u><신 설></u> <u><신 설></u>	1. ~ 5. (현행과 같음) 6. ----- <u>재심사청</u> <u>구</u>----- <u><삭 제></u> <u><삭 제></u> 9.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u>석</u> <u>면피해자 사전 발굴 등 석면</u> <u>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u> 13. 법 제49조에 따른 <u>업무 수행</u> <u>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u> <u>관련자료의 요청 및 취급에</u> <u>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연 락 처	(044) 201 - 6818